

## [참고자료3] 독일의 환경피해보험 관련 법률 (번역)

### 독일의 환경피해보험 관련 법률

#### I. 개요

독일의 경우 일반배상책임보험, 수질오염책임보험,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등이 있음. 환경책임법 이전에는 일반배상책임보험이 환경피해에 대한 배상을 담보하였음.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은 1990년 환경책임법(UmweltHG)이 제정되어, 환경피해보험을 규정하게 되었음. 특히 환경피해보험과 관련하여서는 법 제19조 및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 II. 환경책임법

- 환경책임법 이전에는 환경오염책임의 경우 일반배상책임<sup>1)</sup>에 의해 담보됨. 즉 일반배상책임은 1960년대까지 독일 환경오염배상책임에 관한 보험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음.
- 환경책임법(Umwelthaftungsgesetz: UmweltHG)은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높은 시설물에 대하여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특정시설을 대상으로 종래의 수질오염에 추가하여 대기, 토양오염을 포함하는 모든 환경오염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부과되고 있음.
- 1990년 12월 10일 제정되어, 2007년 11월 23일 최근개정된 환경책임법(Umwelthaftungsgesetz: UmweltHG)은 총2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경침

1) 독일 민법전(BGB) 제823조[손해배상 의무] ①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소유권 또는 기타의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한 사람은, 그 타인에 대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② 타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에 위반한 사람도 동일한 의무를 진다. 그 법률에 과실이 없어도 그에 위반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정하여진 때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배상 의무가 발생한다.

해로 인한 시설책임(제1조), 개념정의(제3조), 물적 손해시의 책임의 제한(제5조), 시설보유자에 대한 피해자의 정보청구권(제8조), 정기금에 의한 손해배상(제14조), 책임한도(제15조), 담보의 제공(제19조), 명령제정권(제20조), 벌칙규정(제21조), 과태료(제22조)등으로 구성됨.

○ 법 제1조에서는 환경책임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음.

**[환경책임법(UmweltHG) 원문 및 번역문]**

원문	번역문
§ 1 Anlagenhaftung bei Umwelteinwirkungen Wird durch eine Umwelteinwirkung, die von einer im Anhang 1 genannten Anlage ausgeht, jemand getötet, sein Körper oder seine Gesundheit verletzt oder eine Sache beschädigt, so ist der Inhaber der Anlage verpflichtet, dem Geschädigten den daraus entstehenden Schaden zu ersetzen.	제1조(환경침해로 인한 시설책임) 별표 1에서 열거된 시설에 의하여 야기된 환경침해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신체·건강상 침해가 있거나 또는 물건이 훼손된 때에는 시설의 보유자는 피해자에게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법 제19조는 환경오염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에서 책임보험의 담보제공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동 규정에서는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높은 시설물(별표2)<sup>2)</sup>에 대하여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음.

**[환경책임법(UmweltHG) 원문 및 번역문]**

원문	번역문
§ 19 Deckungsvorsorge (1) Die Inhaber von Anlagen, die in Anhang 2 genannt sind, haben dafür Sorge zu tragen, daß sie ihren	제19조 (담보의 제공) ① 별표 2에 열거된 시설의 보유자는 그 시설 때문에 초래된 환경침해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신체 또는 건

2) 별표 2 (환경책임법 제19조 관련) 1. 유해물질관리법 제1조, 제7조에 의거한 안전분석이 완료된 시설 2. 불꽃이 없는 야금로에서 귀금속을 재취득하기 위한 시설을 제외하고 유해물질관리법 부록 II의 규정에 따른 합규정적인 영업상 고형물질 내에 존재하거나 합규정적인 영업의 장애에서 발생 할 수 있는 경우로서 배출물질의 양이 1일당 200킬로그램 이하인 경우 연소를 통하여 고형물질에서 개별 구성성분을 재취득하기 위한 시설 3. 질소성분이 백분의 12,6 이하인 셀룰로이드를 원료로 광택도료와 인쇄도료의 첨가물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

<p>gesetzlichen Verpflichtungen zum Ersatz von Schäden nachkommen können, die dadurch entstehen, daß infolge einer von der Anlage ausgehenden Umwelteinwirkung ein Mensch getötet, sein Körper oder seine Gesundheit verletzt oder eine Sache beschädigt wird (Deckungsvorsorge). 2Geht von einer nicht mehr betriebenen Anlage eine besondere Gefährlichkeit aus, kann die zuständige Behörde anordnen, daß derjenige, der im Zeitpunkt der Einstellung des Betriebs Inhaber der Anlage war, für die Dauer von höchstens zehn Jahren weiterhin entsprechende Deckungsvorsorge zu treffen hat.</p> <p>(2) Die Deckungsvorsorge kann erbracht werden</p> <p>1.durch eine Haftpflichtversicherung bei einem im Geltungsbereich dieses Gesetzes zum Geschäftsbetrieb befugten Versicherungsunternehmen oder</p> <p>2.durch eine Freistellungs- oder Gewährleistungsverpflichtung des Bundes oder eines Landes oder</p> <p>3.durch eine Freistellungs- oder Gewährleistungsverpflichtung eines im Geltungsbereich dieses Gesetzes zum Geschäftsbetrieb befugten Kreditinstituts, wenn gewährleistet ist, daß sie einer Haftpflichtversicherung vergleichbare Sicherheiten bietet.</p>	<p>장이 손상되거나 물건이 훼손됨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의 법적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이미 가동되지 않고 있는 시설로부터 특별한 위험이 유발된 때에는 관할행정청은 가동 중지당시의 시설의 보유자에게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p> <p>② 담보의 제공은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p> <p>1. 이 법률의 적용지역 내에서 사업경영의 권한이 있는 보험회사에서의 책임보험</p> <p>2. 연방 또는 주의 임의채무 또는 보증채무</p> <p>3. 이 법률의 적용지역 내에서 사업경영의 권한이 있는 금융기관이 책임보험에 유사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임의채무 또는 보증채무</p>
---	---

<p>(3) Die in § 2 Abs. 1 Nr. 1 bis 5 des Pflichtversicherungsgesetzes in der Fassung der Bekanntmachung vom 5. April 1965 (BGBl. I S. 213), zuletzt geändert durch Gesetz vom 22. März 1988 (BGBl. I S. 358), Genannten sind von der Pflicht zur Deckungsvorsorge befreit.</p> <p>(4) Die zuständige Behörde kann den Betrieb einer im Anhang 2 genannten Anlage ganz oder teilweise untersagen, wenn der Inhaber seiner Verpflichtung zur Deckungsvorsorge nicht nachkommt und die Deckungsvorsorge nicht binnen einer von der zuständigen Behörde festzusetzenden angemessenen Frist nachweist.</p>	<p>③ 1965년 4월 5일 공포되고(BGBl. I S. 213)1988년 3월 22일의 법률(BGBl. I S. 358)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개정된 책임보험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열거된 자는 담보제공의 의무가 없다.</p> <p>④ 관할행정청은 별표 2에 열거된 시설의 보유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합리적으로 지정된 기간 내에 담보의 제공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가동을 중지시킬 수 있다.</p>
---	---

○ 또한 법 제20조에서 보험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를 수 있도록 시행령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환경책임법(UmweltHG) 원문 및 번역문]**

원문	번역문
<p>§ 20 Ermächtigung zum Erlaß von Rechtsverordnungen</p> <p>(1) Die Bundesregierung wird durch Rechtsverordnung mit Zustimmung des Bundesrates Vorschriften erlassen über</p> <p>1.den Zeitpunkt, ab dem der Inhaber einer Anlage nach § 19</p>	<p>제20조(명령제정권)</p> <p>① 연방정부는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p> <p>1. 시설의 소유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을 완료하게 되는</p>

<p>Deckungsvorsorge zu treffen hat,</p> <p>2.Umfang und Höhe der Deckungsvorsorge,</p> <p>3.die an Freistellungs- und Gewährleistungsverpflichtungen von Kreditinstituten zu stellenden Anforderungen,</p> <p>4.Verfahren und Befugnisse der für die Überwachung der Deckungsvorsorge zuständigen Behörde,</p> <p>5.die zuständige Stelle gemäß § 117 Abs. 2 desVersicherungsvertragsgesetzes sowie über die Erstattung der Anzeige im Sinne des § 117 Abs. 2 desVersicherungsvertragsgesetzes,</p> <p>6.die Pflichten des Inhabers der Anlage, des Versicherungsunternehmens und desjenigen, der eine Freistellungs- oder Gewährleistungsverpflichtung übernommen hat, gegenüber der für die Überwachung der Deckungsvorsorge zuständigen Behörde.</p> <p>(2) 1Die Rechtsverordnung ist vor Zuleitung an den Bundesrat dem</p>	<p>시점</p> <p>2. 담보제공의 범위와 그 금액</p> <p>3. 금융기관에 대한 임의채무 및 보증채무의 요구</p> <p>4. 담보제공을 감독할 관할행정청의 권한과 감독절차</p> <p>5. 보험계약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 2항의 규정에 부합하는 관할기관과 보험계약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2항 소정의 공고를 게시할 관할기관</p> <p>6. 시설의 보유자와 보험회사 및 임의채무 또는 보증채무를 인수한 자의 담보제공 감독관할행정청에 대한 의무</p> <p>② 명령은 연방상원에 제출하기 전에 독일연방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p>
---	---

<p>Deutschen Bundestag zuzuleiten. 2Sie kann durch Beschluß des Bundestages geändert oder abgelehnt werden. 3Der Beschluß des Bundestages wird der Bundesregierung zugeleitet. 4Hat sich der Deutsche Bundestag nach Ablauf von drei Sitzungswochen seit Eingang der Rechtsverordnung nicht mit ihr befaßt, so wird die unveränderte Rechtsverordnung der Bundesregierung zugeleitet. 5Der Deutsche Bundestag befaßt sich mit der Rechtsverordnung auf Antrag von so vielen Mitgliedern des Bundestages, wie zur Bildung einer Fraktion erforderlich sind.</p>	<p>연방하원의 의결은 연방정부에 이송된다. 독일연방하원에 명령이 제출된 후 3주간의 회기 내에 이를 처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안대로 연방정부로 이송된다. 연방하원은 교섭단체의 구성에 요구되는 수의 의원의 요구에 의하여 명령을 직접 심의할 수 있다.</p>
--	---

- 그밖에 환경피해 관련 법률로 환경피해법(USchadG), 그리고 개별법으로서 수자원 보호법(WHG), 토양보전법(BBodSchG), 자연보호법(BNatSchG) 등이 존재하나, 환경피해보험에 대해 규정한 내용은 찾을 수 없음.

### III. 환경피해보험 약관

- 독일보험자협회에 의해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약관이 제시되었는데, Besondere Bedingungen und Risikobeschreibungen für die Versicherung der Haftpflicht wegen Schäden durch Umwelteinwirkung (Umwelthaftpflicht-Modell)로, 이를 줄여 GDV 약관이라고 하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sup>3)</sup>.

#### 1. 보험의 목적

1.1. 책임보험약관(AHB)과 다음의 합의에 따라 보험보호가 행해진다.

1.2. 책임보험약관 제7조 제10항 제b호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담보범위에 속하는 위험에 대한 인적 물적 손해가 생기면 보험계약자는 사법적 책임을 담보한다. 책임보험약관 제2조 제1항에 따라 선점권, 설치되고 가동되는 영업권, 수자원법상의 이용권과 처분권에 대한 침해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도 담보된다.

1.3 사법에 의한 담보책임도 적용된다.

#### 2. 보장되는 위험

#### 3. 증가되는 위험에 보장되는 보험

#### 4. 보험사례

#### 5. 보험사례의 활용

3) [http://www.gdv.de/wp-content/uploads/2011/11/22\\_Umwelthaftpflicht-Modell\\_0909.pdf](http://www.gdv.de/wp-content/uploads/2011/11/22_Umwelthaftpflicht-Modell_0909.pdf) (2013/02/26 방문)

## [참고자료4] 일본의 환경피해보험 관련

### 일본의 환경피해보험 관련

○ 유럽이나 미국처럼 보험가입을 직간접적으로 강제하면서 보험회사의 위험성을 한정시킨 「환경책임법」을 두고 있지 않음. 또한 환경피해관련 민간보험의 이용률도 낮음.

○ 1992년부터 일본에서도 환경피해보험이 보급되었고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토양오염정화비용보험, 의료폐기물배출자책임보험, 산업폐기물배출자책임보험이 있음.<sup>4)</sup>

○ 환경피해보험이 활성화 되지 않은 이유

#### 【보험가입자(기업)】

- ① 보험계약 전 심사 시 오염원데이터를 제출해야 하므로 기업에 부담을 줌
- ② 사전감사 절차로 인한 시간상의 손실
- ③ 보험계약체결 후에도 기업의 비용부담으로 보험회사의 환경 감시가 계속됨
- ④ 고액보험료 이외에도 보험금의 지불시 기업부담이 상당함
- ⑤ 환경리스크에 대한 피해 산정이 어려움
- ⑥ 경영층의 환경리스크에 대한 인식 부족 등

#### 【보험회사】

- ① 오염가능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보험가입을 희망함

4) 久保英也, “日本における環境保険の普及に向けた提案”, 生命保険論集第 167号, 2009年

- ② 보험가입 후 보험회사 의존으로 기업내 환경에 대한 도덕적 해이 존재
- ③ 환경오염사례가 적어 리스크를 감안한 보험료 산정이 어려움
- ④ 재보험 인수자의 부재
- ⑤ 환경오염 발생 시 가입자와 피해자의 특정에 방대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
- ⑥ 오염사고 리스크의 평가 곤란
- ⑦ 환경오염에 관한 법령의 개정으로 보상범위의 변화 등

○ 일부 보험회사가 환경피해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이유

- 손해보험회사의 영업전략으로 환경피해보험 상품을 판매함
- 환경피해보험만으로는 채산성(採算性)이 부족하나 손해보험과 관련된 영업권이 제한되어 있는 바, 다른 보험회사와 차별성을 두기 위해 환경피해보험상품이 필요한 기업과의 우호관계 형성차원에서 보험을 판매함
- 보험회사는 ① 리스크가 큰 환경피해보험을 인수하는 대가로 다른 종목의 기업보험을 판매함, ② 보험회사의 브랜드전략차원에서 환경피해보험의 판매를 선전광고, ③ 기업의 종합리스크관리 컨설턴트로서의 지위 확보 등

\* 현재 AIU보험, 일본화재, 안전화재, 스미토모해상, 미츠이해상 등에서 환경오염 배상책임보험을 판매하고 있음.<sup>5)</sup>

5) 한만주,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제도”, 강원대학교 강원법학 제36권, 2002, p21.